의 안	번 호	제	ই
의	결	2020.	
연 -	월 일	(제	회)

의 결 사 항

소 프 트 웨 어 산 업 진 흥 법 시 행 령 전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최기영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소프트웨어인력 양성, 기술개발 촉진 등 산업 기반 조성과 소프트웨어 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한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(법률 제17348호, 2020. 6.9., 공포, 2020. 12.10.,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(안 제7조 및 제8조 신설)

- 1) 법 제9조(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) 신설에 따라 지역별 소프 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요건과 위탁업무를 규정하여 지역별 특 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고자 함
- 2) 지역산업진흥기관이 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
- 나.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내용(안 제30조 신설)
 - 법 제38조(공정계약의 원칙) 신설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에 과업내용의 확정방법, 확정시기, 계약금액, 계약기간, 계약내용 변경,

손해배상, 지식 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 다.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(안 제32조 및 제33조 신설)

- 법 제40조(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) 신설에 따라 민간투자형 소 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및 추진절차 등을 규정
- 라. 소프트웨어산출물 반출 거절사유(안 제54조 신설)
 - 법 제59조(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) 신설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산출물 반출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: 부처 협의 전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0. 9. 1. ~ 10. 12.) 예정

2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전

대통령령 제 호

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

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

- 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) ①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0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
 - 2.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
 - 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 -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·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- 제3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3년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·시행하고,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,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 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4조(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의 수집(이하 '실태조사 등'이라 한다)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기한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 - 1. 제출요청사유
 - 2. 제출기한
 - 3.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
 - 4. 제출자료의 방식 및 형태
 - 5. 제출자료의 활용방법
 - ② 실태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,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자료제출요청 및 자료제출을 할 수 있다.

- 제5조(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개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(이하 '종합관리체계'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 - 1. 종합관리체계의 구축 ·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
 - 2.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
 - 3.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
 - 4. 그 밖에 종합관리체계의 구축 ·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·운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된 사업체·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제6조(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) 법 제8조제3항제4호에서 "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 - 1. 소프트웨어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
 - 2. 해외 소프트웨어 산업 및 정책 동향 분석
 - 3. 소프트웨어 정책 관련 자문
 - 4. 그 밖에 소프트웨어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- 제7조(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)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 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(이하 "지역산업진흥기관"이라 한다)의 지 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할 것
 - 2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
 - 3. 법 제9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물적 시설을 보유할 것 4.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부서 및 인력을 확보할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권역별(특별시는 제외한다)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산업진흥기관들 중 시·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기관(이하'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'이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수 있다.
 - 1.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 및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, 지역 현황 및 실태의 조사·연구
 - 2.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 및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 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
 - 3. 지역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또는 소프트웨어와 지역 산업과의 융합 분야의 기업 육성 및 창업 촉진 사업
 - 4. 지역 소프트웨어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
 - 5. 지역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
 - 6. 지역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국제 교류협력 촉진 및 해외진출 지원 사

업

- 7. 지역 소프트웨어의 품질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업
- 8. 지역 소프트웨어사업 진흥 또는 지역 산업과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
- 9. 기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및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의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
- ⑥ 제1항의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, 제2 항의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위탁업무 수행방법 등 기타 필요 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제8조(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) ① 지역산업진흥기관은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소프트웨어 진흥정책을 수립할때에 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9조(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)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(이하 "진흥시설"이라 한다)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같다.
 - 1. 5(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)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주할 것
 - 2. 총입주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
 - 3.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
 - 4. 공용회의실 및 공동이용장비실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
 - 5.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
 - ②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- ④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, 변경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제10조(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등)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프 트웨어진흥단지(이하 "진흥단지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.
 - 1. 25(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0)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
 - 2.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이 있을 것
 - 3. 교통 · 통신 · 금융기관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
 - 4.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
 - ②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진흥단지의 공고 등에 관하여 준용하다.
- 제11조(진흥시설 등의 지정취소 등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 및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·도지사의 의견을들어야 하며,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- 제12조(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조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
 - 2. 초고속통신망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
- 3. 기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13조(국유재산의 무상 사용) 법 제15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1. 소프트웨어사업자
 - 2. 소프트웨어사업을 창업하려는 자
 - 3.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제14조(인증기관의 지정 등)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(이하 "인증기관"이라 한다)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
 - 2.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
 - 3.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별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인증

- 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③ 그 밖에 인증기관의 세부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품질인증기준)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
 - 2. 소프트웨어의 성능효율성·호환성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수준 이상일 것
 -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제16조(품질인증의 실시) ① 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(이하 "인증마크"라 한다)를 부착할 수 있다.
 -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인증비용의 청구에 필요한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 - ④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마크의 서식, 기타 품질인증의 실시를 위하

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

- 제17조(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)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(이하 "프로세스 인증"이라한다)을 실시하는 기관(이하 "프로세스 인증기관"이라 한다)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프로세스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심사인력을 확보할 것
 - 2. 프로세스 인증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영절차를 갖출 것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프로 세스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공 고하여야 한다.
 - ③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세부지정요건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프로세스 인증기준)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개별 소프트웨어프로세스의 특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, 인증기준을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.
 - 1.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수립, 통제 등 관리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
 - 2.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에서 필요한 분석, 설계 등 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
 - 3.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보증 등 지원 프로세스에 관한

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

- 4. 조직의 프로세스 표준화 및 이의 적용·확산 등 조직관리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
- 5.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유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
- 6. 기타 소프트웨어 융합 등 산업분야에 필요한 프로세스 능력 및 품질 특성에 관한 개발 및 관리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
- ② 제1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기준의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제19조(국가기관등의 범위)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국가 · 지방자치단체
 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 - 3..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. 다만,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.
 - 4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 - 5.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
 - 6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

- 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- 제20조(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우대)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할 때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.
- 제21조(프로세스 인증의 절차 등) ① 법 제21조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프로세스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받은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프로세스 인증표시를 제품 또는 홍보물 등에 부착할 수 있다.
 - ③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프로세스 인증 심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프로세스 인증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 - ④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.
 -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2회에 한하여 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있다.
 - ⑥ 프로세스 인증신청과 심사절차,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. 그 밖에 프로세스 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

부령으로 정한다.

- 제22조(소프트웨어인력의 양성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교육훈련의 기본방향
 - 2.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
 - 3.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"학교나 연구소,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"란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 - 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- 2.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(이하 '정보통신산업진흥원'이라 한다)
 - 3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 - 4. 「민법」 제32조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

- 5.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때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정할 수 있다.
-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프 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 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⑥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3조(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)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은 비학위 과정으로 운영한다.
 - ②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- 1. 집중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등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의 개발, 운영 및 보급
 - 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
 - ③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하되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- 제24조(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 확인) 법 제24조제5항에서 "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료"란 소프트웨어기술자와 관련되는 업체·기관에

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

- 1.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에 따른 국세청의 휴업·폐업 및 사업자 등록에 관한 자료(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)
- 2. 「상업등기법」 제2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등기전산정보자료
- 3.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·관리하고, 제출받은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25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(법 제7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·관리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- 제26조(연구활동 지원 대상자 선정 등)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"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.
 - 1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소프트웨어 관련연구를 수행하는 기관
 - 2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

- ② 법 제26조 제4항에 따른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, 연구활동 사업비의 지원 및 협약의 체결, 연구활동 결과보고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0조 중 개인 연구 자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. 이 경우, '학술지원'은 '연구활동 지원'으 로, '학술활동'은 '연구활동'으로, '교육부장관'은 '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'으로 본다.
- 제27조(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등) ① 법 제29조제3호에서 "그 밖에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 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소프트웨어개발보안에 관한 법ㆍ제도 조사연구
 - 2. 소프트웨어개발보안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국제협력
 - 3. 소프트웨어개발보안 관련 보안약점 진단 등 기술지원
 - 4.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적용을 위한 가이드 제정 보급
 - 5.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정보 축적 및 활용
- 제28조(소프트웨어안전산업 진흥 관련 사업) 법 제31조제6호에서 "대통령경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 - 1. 소프트웨어안전에 관한 법 · 제도 조사연구
 - 2. 소프트웨어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국제협력
- 제29조(소프트웨어 역량의 검정방법)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의 검정(이하 "소프트웨어 역량평가"라 한다)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

- ② 소프트웨어 역량평가는 대한민국 국민,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.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의 내용・일시・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소프트웨어 역량평가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역량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지하거나 응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-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소프트웨어 역량평가 결과는 무효로 하며, 해당 응시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년간 소프트웨어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없다.
-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역량평가에 응시하거나 역 량평가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에게 실제 소요되 는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- ⑦ 그 밖에 소프트웨어 역량평가의 관리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제30조(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) 법 제38조제2항에서 "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- 1. 구체적인 과업내용의 확정방법과 확정시기
 - 2. 제1호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
 - 3.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물가, 인건비 변동 등 다른 사유로 인한 계

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

- 4.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지체상금, 위약금, 그 밖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
- 5.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의 범위와 판단기준
- 6.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, 활용, 보호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계약의 공정성과 계약내용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사항
- 제31조(불이익행위등의 신고)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불이익행위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신고자의 성명·주소·연락처
 - 2.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)
 - 3. 신고자가 받은 불이익행위등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해당 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날(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)부터 7일이내에 신고접수 사실, 신고자, 신고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피신고자에

게 직접 또는 우편(전자우편을 포함한다)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해 신고자와 되신고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,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신고 내용이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내용의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고 자와 피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보방법은 제3항의 규 정을 준용한다.
- 제32조(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)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일 것
 - 가. 민간부문(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제2조제12호의 민간부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이미 개발한 소프트웨어(경미한 변 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공공부문(「사회기반시설에 대 한 민간투자법」제2조제11호의 공공부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서비 스 형태로 이용하는 사업

나.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중 민간부문의 부담비율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

- 2. 사업 수행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
- 3. 제1호 각 목의 사업별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방법을 갖출 것
- 가. 제1호 가목의 사업: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나. 제1호 나목의 사업: 소프트웨어의 개발·운영방식 및 비용·수익 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
- ②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먼저 소관 행정기 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33조(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절차 등)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을 법 제40조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확인받으려면 제32조의 요건을 증명하는 내용을 포함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계획서(이하 "사업계획서"라 한다)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계획이 제32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고시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의 계획 중에서 제32 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,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다 시 받아야 한다.

-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민간부문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3자가 추가적인 제안을 할수 있도록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따라 제4항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최초제안자를 우대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 이외에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고시로 정한다.
- 제34조(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)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1조제 1항에 따라 소관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 의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종합관리체 계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.
 - 1. 해당 연도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: 매년 2월 말
 - 2. 다음 연도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: 매년 10월 말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- 제35조(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)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"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 - 1.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·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
 - 2. 국가안보, 치안,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
 - 3. 법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
 - 4.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
- 제36조(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재평가 제외사유) 법 제43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1. 제35조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
 - 2. 재평가를 실시한 이후에도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
- 3.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평가를 요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37조(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등)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(이하 "영향평가"라 한다)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민간 소프트웨어와의 유사성,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및 사업의 필요성·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고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

정하는 시기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,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.

- 1.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. 이 경우 영향평가 결과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2.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. 이 경우 영향평가 결과서(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)를 입찰공고 시 공개하여야 한다.
- 3.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배포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할 때. 이 경우 영 향평가 결과서(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)를 해당 국가기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43조제3항에 따라 재평가할 때 법 제50조에 의해 구성된 과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향평가 결과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등 소프트웨어사업을 재검토하여야 한다. 다만,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향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 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향평가의 실시에 필 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- 제38조(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 등)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지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는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「통계법」에 따라 조사·공표한 바를 기준으로 한다.
- 제39조(소프트웨어사업 사전협의 대상)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「전자정부법 시행령」제82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사전협의를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사전협의 대상사업 중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.
- 제40조(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) ① 법 제48조제1항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.
 -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한다.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되지 아니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하여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을 준용하여 대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다.

- 제41조(자료협조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적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제42조(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)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의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부터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까지를 말한다.
 - ② 법 제49조제1항 본문의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부터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까지를 말한다.
- 제43조(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(이하"과업심의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 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② 위원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정보통 신산업진흥원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을

추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산업진흥 원은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.

- 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- 2.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- 3.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
- 4.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천한 자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제44조(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・의결한다.
 - ③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하는 기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안건의 심의 ·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 - ④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

- 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(忌避)를 신청할 수 있고, 과업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 대 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⑤ 위원이 제3항에 따라 안건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해야 한다.
- 제45조(과업내용의 확정·변경 절차 등)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호의 안건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과업심의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,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한다.
 - 1. 법 제50조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의 확정에 관한 안건
 - 2. 법 제50조제2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·계약기간 등의 조정(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의 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범위에서 과업의 재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관한 안건
 - 3.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에 관한 안건
 - 4.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수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국가기관등의 장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
 -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과업심의 위원회의 개최를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이를 위

원장에게 알려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-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결결과 및 조치계획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 다만, 안건심의 관련 과업변경 사실관계의 추가 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1차에 한정하여 14일의 범위에서 통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.
-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할 때 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등 과업변경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.
- ① 그 밖에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절차 등 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.

제46조(하도급 제한의 예외 등) ① 법 제51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1호

- 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1.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 제1항, 제37조 및 제38조2에 따른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
- 2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,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
- 3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제 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
- 4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 조제1항 제4호 바목부터 자목까지, 타목 및 파목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
- 제47조(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) ①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"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지 원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.
 -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수 없다.
- 제48조(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) 법 제51조제6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"이란 사업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.
- 제49조(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등)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.
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③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령으로 정한다.
- 제50조(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)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(이하 "평가시험"이라 한다)의 대상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경쟁입찰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려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 중 우수 소프트웨어 제품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으로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 대상의 세부 평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제51조(평가시험의 의뢰 절차 등)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에 평가시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기관에게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의뢰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시험기관은 평가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동일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이미 시험기 관으로부터 평가시험을 받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결과를 소

프트웨어 제품의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.

-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시험의 의뢰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렁으로 정한다.
- 제52조(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의 공개 등) ① 법 제56조제2항에서 "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"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
 - 1.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업명 및 계약금액
 - 2.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명 및 계약금액, 수량, 계약방법
 - 3. 계약일자 및 계약자명
 -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.
- 제53조(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소프 트웨어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분야별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록을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신청하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에 관한 증 명서(이하 "소프트웨어사업 증명서"이라 한다)를 발급하여야 한다.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증명서를 발급(재발급을 포함한다)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실제 비용의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 - ④ 법 제58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"란 다음 각 호의

자료를 말한다.

- 1.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에 따른 국세청의 휴업·폐업 및 사업자 등록에 관한 자료(다만,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)
- 2. 「상업등기법」 제2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등기전산정보자료
- 3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자료
- 4.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관한 기록을 유지·관리하고, 제출받은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자료
-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와 그 분야별 실적, 증명서 발급 절차, 제2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
- 제54조(소프트웨어산출물 반출 거절사유) 법 제59조제1항에서 "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.
 - 1. 「국가정보원법」에 따른 「보안업무규정」제2조제1호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
 - 2. 그 밖에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 반출 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고 시하는 경우

- 제55조(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)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공제조합(이하 "공제조합"이라 한다)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 10인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 - ③ 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.
- 제56조(정관기재사항)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목적
 - 2. 명칭
 - 3. 사무소의 소재지
 - 4. 사업에 관한 사항
 - 5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 - 6.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
 - 7. 조합원의 권리 · 의무에 관한 사항
 - 8.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
 - 9.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
 - 10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
- 11.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- 12.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
- 13. 공고에 관한 사항
- 14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제57조(공제조합의 등기) 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

- 1. 목적
- 2. 명칭
- 3. 사업
- 4. 사무소의 소재지
- 5. 설립인가 연월일
- 6.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
- 7.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
- 8. 임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
- 9.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
- 10. 대리인에 관한 사항
- 11. 공고의 방법
-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(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사항을 제외한다)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.

제58조(공제조합의 사업) ① 법 제62조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사업"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- 1. 소프트웨어 공제사업 관련 조사연구사업
- 2.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 · 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
- 3.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등에 대한 정보제공
- 4.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사업
- 5.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
- 6.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
- 7.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
- ②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관 및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- 1. 법 제62조제1호의 투자 및 그 투자업체에 대한 자금대여
- 2.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업
- 제59조(기본재산의 조성)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소프트웨어산업 유관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·출연금 또는 예 탁금
 - 2.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
 - 3.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

- 제60조(공제규정의 승인) 법 제64조제3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
 - 2. 공제조합의 준비금 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
 - 3.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배수 및 요율에 관한 사항
 - 4.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
- 제61조(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) ①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·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적립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.
 - ③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.
- 제62조(출자 및 출자증권 등)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 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.
 - ② 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.
 - ③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.
- 제63조(출자증권의 명의변경) ①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67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변경을 받아

- 야 한다.
- ② 공제조합은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변경한 후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.
- 제64조(공제조합의 회계)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중 출연금 및 출자금은 자본계정의 자본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, 손실보전준비금은 자본계정의 손실보전준비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.
 - ② 공제조합의 회계는 공제조합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되, 그 기준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.
- 제65조(공제조합의 보고사항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 - 1.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
 - 2. 조합원의 재정실태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사항
 - 3. 기타 공제조합 및 조합원에 관계되는 주요한 사항
- 제66조(업무의 위탁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 - 1. 법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업무
 - 2.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
 - 3. 법 제11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업무

- 4. 법 제12조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에 관한 업무
- 5. 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
- •관리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
- 6. 법 제2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에 관한 업무
- 7. 법 제3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의 검정에 관한 업무
- 8.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 법 위반 및 불이익행위등의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
- 9. 법 제4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수요예보에 관한 업무
- 10. 법 제42조에 따른 발주기술 지원에 관한 업무
- 11. 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·분 석과 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업무
- 12. 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 및 적정대가 산정 지원과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정보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업무
- 13.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법령 준수여부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확인, 결과 공개 및 개선권고의 지원에 관한 업무
- 14. 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영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- 1. 제7조제2항에 따른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수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의 관리·감독에 관한 업무
- 2. 제8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
- 3.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자의 동의 여부 확인 및 피신고자에의 통지에 관한 업무
- 4. 제32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이 법 위반과 불이익행위등에 관한 신고의 조사에 대한 지원 업무
- 5. 제37조제5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기술지원
- ③ 제1항과 제2항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정보통신산업진흥원
- 2. 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
- 3. 그 밖에 소프트웨어 진흥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과 영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제67조(출연금 환수) 법 제74조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출연금 : 정보통신산업진흥원
 - 2.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: 해당 출연금의 관

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

- 제68조(규제의 재검토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1. 제9조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요건: 2017년 1월 1일
 - 2. 제11조제1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요건: 2017년 1월 1일
 - 3.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요건: 2016년 1월 1일
 - 4. 제60조에 따른 공제규정의 승인: 2017년 1월 1일
 - 5. 제61조에 따른 손실보전 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: 2017년 1월 1일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아래 열거된 기관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
 - 1) 강릉과학산업진흥원
 - 2) 강원정보문화진흥원
 - 3) 경기테크노파크

- 4) 경남테크노파크
- 5)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
- 6)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
- 7)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
- 8)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워
- 9) 부산정보산업진흥원
- 10) 세종테크노파크
- 11) 안양창조산업진흥원
- 12)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
- 13) 울산정보산업진흥원
- 14) 인천테크노파크
- 15)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
- 16)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
- 17) 제주테크노파크
- 18) 충남테크노파크
- 19) 충북과학기술혁신원
- 20) 포항테크노파크
- 제3조(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과업심의위원회로 본다.
 -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

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는 제4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.

제4조(과업내용의 확정·변경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) 제45조 개정규정 중 제6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하고, 나머지 조항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에도 적용한다.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게임산업진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제2호 중"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5호"를"「소 프트웨어 진흥법」 제2조제10호"로 한다.

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 중 "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"은 "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"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제3호나목 중 "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13조"는 "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20조"로 한다.

제37조제2항제4호아목 중 "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"은 "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"으로 한다.

③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중 "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"은 "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"으로 한다.

제91조제5항 중 "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26조"는 "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10조"로 한다.

④ 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제11호 중 "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"은 "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"으로 한다.

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제1항제6호 중 "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"은 "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"으로 한다.

⑥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"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"은 "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"으로 한다.

⑦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제4호 중 "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자"는 "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제58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자 한다.

⑧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1조제2항제6호 중 "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"은 "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"으로 한다.

⑨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 중 "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2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"은 "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"으로 한다.

제78조의3제3호 중"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"은 "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"으로, "제5호"는 "제10호"로 한다.

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5호 중"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24조의2제2항"은 "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"으로 한다.

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제2호 중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"은 "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"으로 한다.

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5호 중 "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"은 "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"으로, "제5조"는 "제11조"로, "제6조"는 "제12조"로 한다.

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4호 중 "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13조제1항"은 "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20조제1항"으로 한다.

(4)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제12호 중 "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"은 "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"으로, "제27조"는 "제61조"로 한다.

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제6호라목 중 "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13조"는 "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20조"로 한다.

제37조제2항제4호자목 중 "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"은 "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"으로 한다.

(b)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"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14조제2항"은 "「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"으로 한다.

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나목 중"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5조"는"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11조"로 한다.

제6조 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프 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 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[별표 1]

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(제22조제3항 관련)

1. 교육과정

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 · 운영할 것

2. 교육시설 및 설비

가. 소프트웨어 전문교육을 실시할 교육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.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되어야 하 며, 소방안전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

다. 24시간 교육전용으로 교육시설을 소유하거나 장기 임차를 할 것. 만일 임차일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임차가 유지되어야 한다.

3. 전문교수요원

다음 각 목의 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가.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강의·실무 경력을 보유한 사람

- 나.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한 사람
- 다. 가목 및 나목과 동등하게 인정되는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

4. 전문교육 추진 및 운영 계획 소프트웨어 전문교육 추진 실적 및 운영 계획이 적절할 것

5. 교육운영조직 및 예산

- 가. 교육운영조직: 교육운영 전담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며, 교육생 관리 및 교육과정 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4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
- 나. 예산: 교육기관 운영예산을 포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지원금 활 용계획이 적절할 것

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[별표 2]

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요건(제49조제1항 관련)

1. 일반요건	가.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
	•검사기관일 것
	나. 「민법」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
2. 조직 및 인력	가. 시험 및 교정기관에 관한 국제표준(ISO/IEC 17025)에 따른
	요구사항에 적합한 조직을 보유할 것
	나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필수인력을 보유할 것
3. 장비 및 시설	가. 서버, 스토리지, 네트워크 장비, 운영체제, 시험자동화도구
	및 성능측정도구 등 평가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할 것
	나. 시험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된 평가시험 공간 및 시설을 보유
	할 것
4. 기술역량	시험 및 교정기관에 관한 국제표준(ISO/IEC 17025)에 따른 요
	구사항에 적합한 기술역량을 보유할 것
5. 시험방법	시험 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별 평가항목 및 시험절차 등 과학
	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시험할 것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			
연 락	처	(044) 202 - 6324	